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문공보담당관 김구열

전화 041-660-4401/ 팩스 041-660-4449

보도자료
2023. 8. 28.(월)

제 목

태안 지역에서 한국서부발전(주)과 민간기업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 한국서부발전(주) 간부 포함 2명 구속, 7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8. 25.(금)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서 전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과 민간기업이 태안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2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한국서부발전(주) 간부와 민간기업 임원 등 2명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한국서부발전(주) 간부와 민간기업 대표 등은 공모하여, ① 허위의 용역 대금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 3,600만 원을 유용하여 나누어 갖고, ② 인·허가 및 이사회 결의 등의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한국서부발전(주)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주)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행위로 한국서부발전(주)에 약 4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 또한 한국서부발전(주) 간부는 ③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약 1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④ 민간기업으로부터 장기간 · 수차례 상품권과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⑤ 유착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 서산지청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기업의 비리 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 ㄱ○○(58세, 한국서부발전(주) 태양광사업부 차장)
※ 한국서부발전(주)은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서, 발전소 건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 전문 공기기업임
- ㄴ○○(39세, A 주식회사 사업부장)
- ㄷ○○(51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ㄹ○○(42세, C 주식회사 관리실장, B 주식회사 이사)
- ㅁ○○(60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ㅂ○○(39세, C 주식회사 건설사업부장)
- B 주식회사(태안군 甲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E 주식회사(태안군 乙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C 주식회사(甲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

② 공소사실 요지

※ 별첨 주요 범죄사실의 요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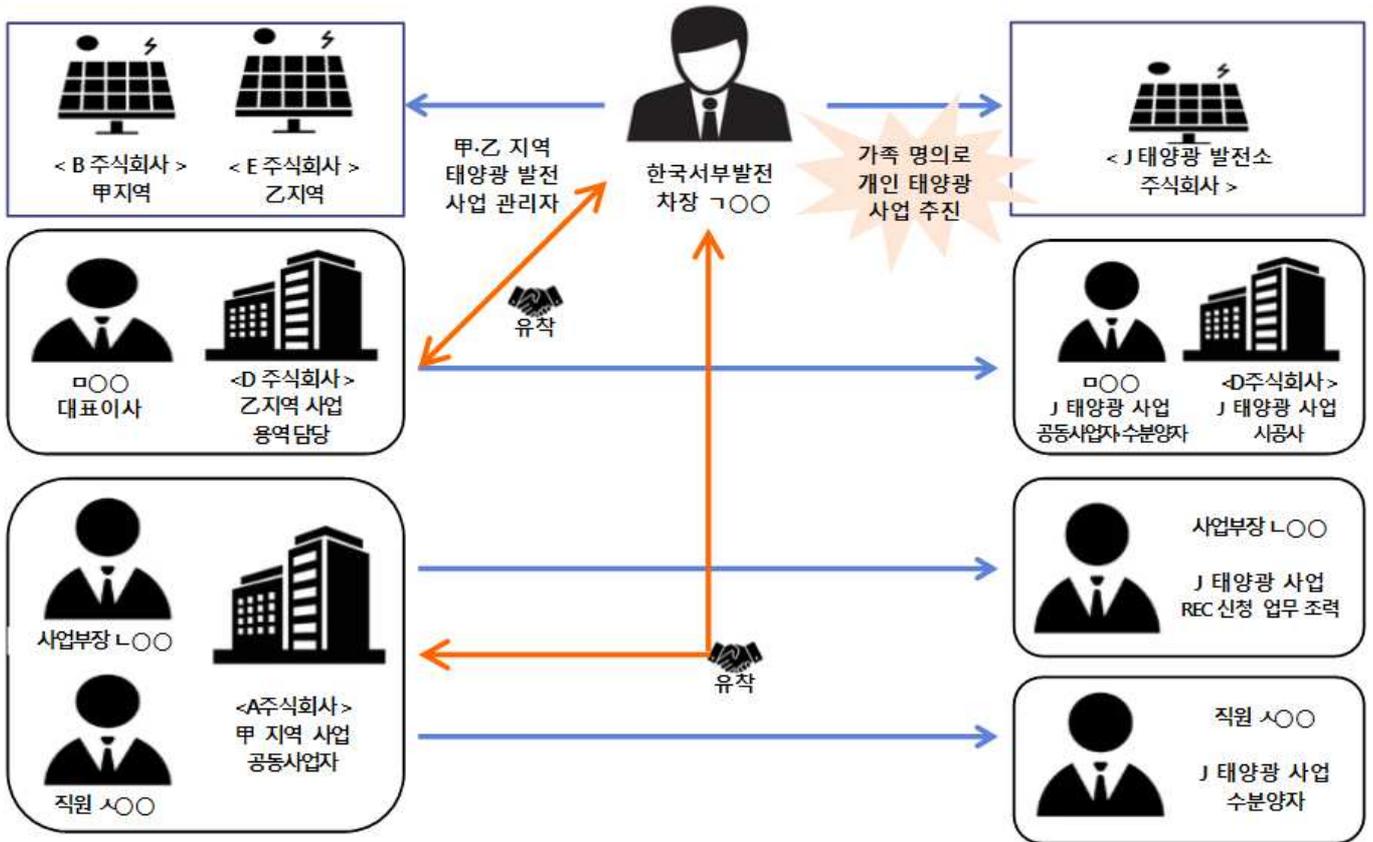
II

수사 경과

- '23. 4. 14. 감사원, 수사 의뢰
- '23. 5. 31. 한국서부발전(주) 사무실, ㄱ○○ 주거지 등 13곳 압수수색
- '23. 6. ~ 7. 압수물 분석, 계좌추적, 사건관련인 총 26명에 대한 45회 소환 조사
- '23. 8. 8. ㄱ○○, ㄴ○○ 구속
- '23. 8. 25. ㄱ○○, ㄴ○○ 구속 기소,
ㄷ○○, ㄹ○○, ㅁ○○, ㅂ○○, B사, E사, C사 불구속 기소

① 발전 공기업 간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유착 관계 형성 경위

<유착 관계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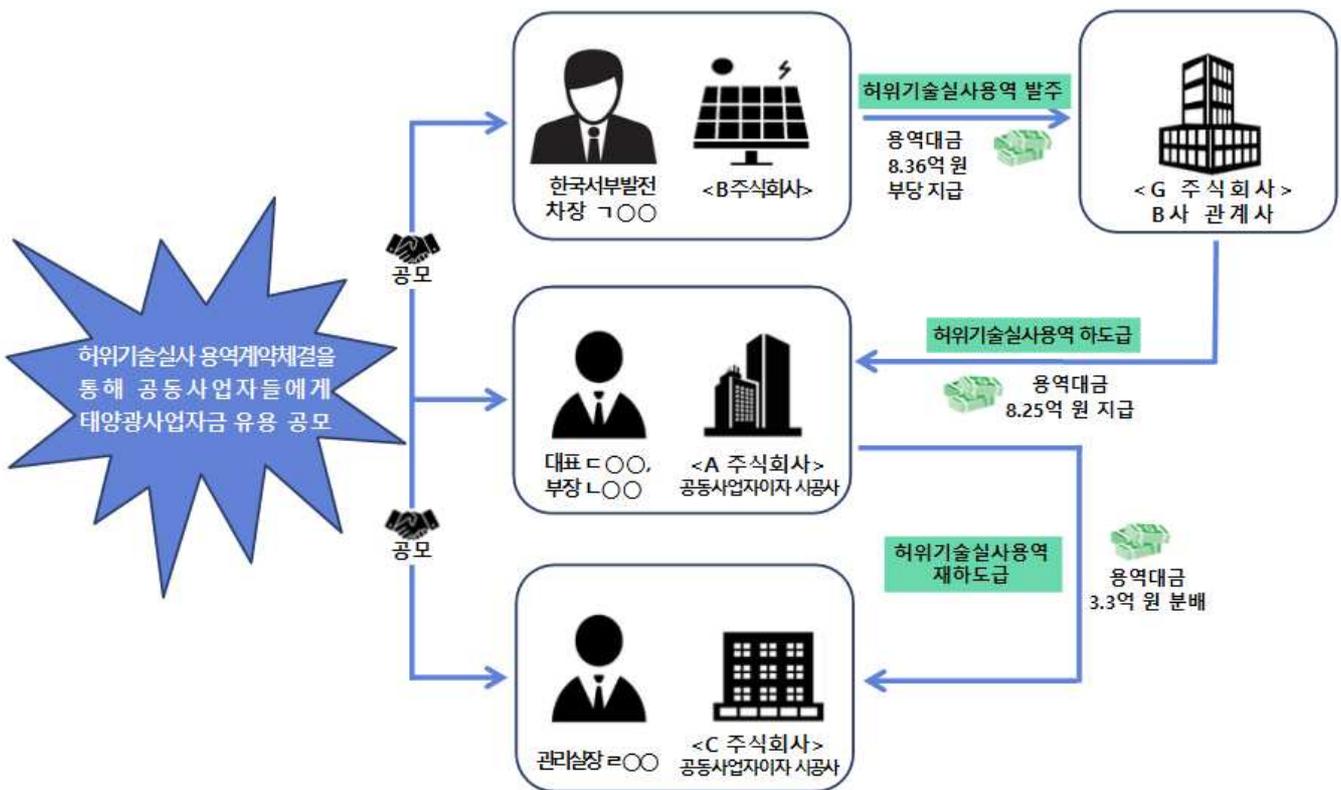
-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은 국가 시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적 의욕, 사업의 경제성 및 신속성 등을 명목으로 민간기업들과 함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하면서, 중간 간부에게 시공·용역 수행 업체의 선정, 사업자금의 집행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상황이었음
- ㄱ○○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양광사업부 소속 차장이자 한국서부발전(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관리자이었기에, 위 발전사업 공동추진하거나 관련 시공·용역 수행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은 사업체 선정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가진 공기업 직원 ㄱ○○의 호감을 얻을 필요가 있었음

⇒ 그에 따라 ㄱ〇〇는 민간기업들로부터 약 2년 반 동안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거나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으로 민간기업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음

- 또한 ㄱ〇〇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처와 아들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의 특수관계를 맺기도 하였음
- 이러한 유착관계는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 주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간부가 민간기업들과 결탁하여 나랏돈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민간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허위 용역 발주 및 대금 지급을 통한 대담한 배임 범행

<범행 구조도>



- 태안군 甲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은 ㄱ〇〇가 관리자로 있던 사업으로서, 한국서부발전(주), 민간 공동사업자인 A사, C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특수 목적법인 B사를 설립하였음

- 다만, 위 B사를 설립 과정에서의 인·허가상 문제로 발령된 태안군의 원상 회복명령에 따라 민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진행되었음

⇒ 그 과정에서 민간 공동사업자인 A사 및 C사는 100과 사이에 형성된 유착관계를 기초로 100에게 기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주식매각대금 외에 추가적인 대가, 속칭 ‘베네피트’을 요구하였음

- 이에 100은 200 등과 공모하여, B사로 하여금 200이 섭외한 용역 업체 G사에 허위의 기술실사 용역 계약을 발주하게 하고, G사가 받은 용역대금을 ‘베네피트’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가짐

③ 법령 및 절차 무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해 발생

- 태안군 乙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또한 100가 관리자로 있던 사업으로서 한국서부발전(주), 지역 주민 투자자 등의 지분 참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E사를 설립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9호 및 한국서부발전(주) 정관 등에 의하면,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의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채무보증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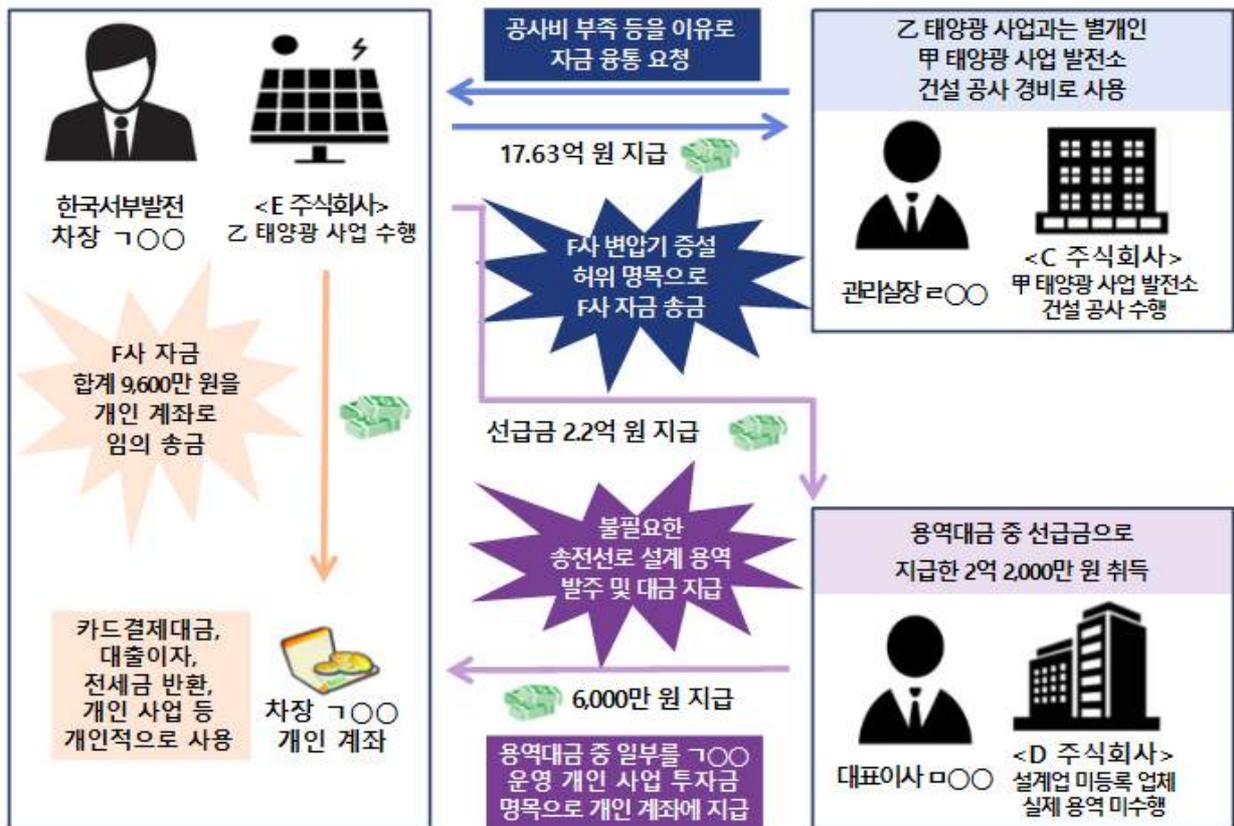
- 그럼에도 100은 정부시책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서부발전(주) 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E사의 민간 공동사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한국서부발전(주)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서부발전(주)에 연대보증 범위(8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내지 실해의 위험을 발생시킴

- 아울러 관련 법령, 한국서부발전(주) 정관 및 내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한 각종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위한 법률 검토 및 채권 보전조치 없이, 다른 민간투자자들의 지분에 따른 개발비 납입이 담보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한국서부발전(주) 자금 30억 9,100만 원을 사업에 무리하게 투입 및 지출함으로써 한국서부발전(주)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음

- 결국 위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도 득하지 못한 채 실패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서부발전(주)의 재산상 손해 내지 실패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됨

④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범행 구조도>



- 이외에도 100은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 자금으로 구성된, E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필요 또는 유착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E사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거나 위 공동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음
- 아울러 100은 유착관계에 있는 100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고, 100이 취득한 이득금 중 일부를 100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함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사업 과정에서의 법령 및 각종 절차 미준수, 공동사업자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조리, 자금 집행에 관한 사전 감독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총체적 문제점을 면밀히 수사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사이의 유착관계 및 결탁 사실을 밝혀 고질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비리를 차단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주의 촉구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공기업 주도 사업의 부실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음
-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사업 단계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각종 절차를 무시한 자금 집행을 적발함으로써, ‘관례’ 또는 ‘업무상 편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탈법적 행태에 경종을 울림
- 검찰은 재판 절차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주요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범죄사실 요지	처분
1	甲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범행	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 ㄴ○○, ㄷ○○, ㄹ○○는 '22. 6. 24.경 피해자 B사로 하여금 A사의 관계사인 G사와 허위의 기술실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억 3,600만 원을 G사에 지급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 ㄱ○○, ㄷ○○, B사는 '20. 3. 4.경 전력시설물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A사와 C사에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이 포함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지 아니하여 【전력기술 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 ㄹ○○, C사는 '20. 2.경 B사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주어 【전기공사업법위반】 	구속기소 (‘23. 8. 25.)
2		ㄴ○○		구속기소 (‘23. 8. 25.)
3		ㄷ○○		불구속기소 (‘23. 8. 25.)
4		ㄹ○○		불구속기소 (‘23. 8. 25.)
5		B사		불구속기소 (‘23. 8. 25.)
6		C사		불구속기소 (‘23. 8. 25.)
6	乙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범행	ㄱ○○ (순번 1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는 '19. 5. 13.경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의 이사회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가 E사의 대여금 채무 14억 6,800만 원의 60%(8억 8,000만 원 상당)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위조한 후 교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ㄱ○○는 '19. 12. 24.경 관계 법령 및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 내부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반하여 인허가, 정부출자협약, 이사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검토 및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억 9,100만 원을 E사에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ㄱ○○, E사는 '19. 3. 6.경 및 '20. 9. 1.경 전력시설물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들에 송전선로 등 전력 시설물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전력기술관리법위반】 	구속기소 (‘23. 8. 25.)
7		E사		불구속기소 (‘23. 8. 25.)

8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백화점식 비리 범행	ㄱ○○ (순번 1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는 E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중 '19. 6. 27.경 ~ '19. 8. 22.경 3회에 걸쳐 합계 약 9,600만 원을 임의로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전세보증금반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구속기소 (‘23. 8. 25.)
9		ㄴ○○ (순번 2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는 E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 4. 13. ~ 14.경 약 17억 6,400만 원을 C사에 임의로 송금하여 乙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과는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속기소 (‘23. 8. 25.)
10		ㄷ○○ (순번 3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직원으로서 한국서부발전(주) 주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관리 및 담당하는 과정에서 '20. 1. 5.경 ~ '22. 7. 19.경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사업과 관계 있는 민간 업체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약 407만 9,750원 상당의 상품권 및 골프 접대를 제공받아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23. 8. 25.)
11		ㄹ○○ (순번 4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ㄴ○○, ㄷ○○, ㄹ○○, ㅁ○○, ㅂ○○는 위와 같이 ㄱ○○에게 상품권 및 골프 접대를 제공하여 【뇌물공여】 ● ㄱ○○, ㅁ○○는 '20. 9. 1.경 피해자 E사로 하여금 전력 시설물 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도 없고 직접 설계 용역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D사에 전력시설물인 송전선로 설계 용역 계약을 발주하게 하고, '21. 3. 30.경 D사에 그 선급금 명목으로 2억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ㄱ○○는 이 중 6,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업무상배임】 	불구속기소 (‘23. 8. 25.)
12		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ㅁ○○는 D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을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중 '21. 4. 12.경 및 '21. 11. 16.경 2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임의로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불구속기소 (‘23. 8. 25.)
13	ㅂ○○			불구속기소 (‘23. 8. 25.)

피고인 총 9명 기소 (2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